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김민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2-75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2년 8월 26일

발 의 자: 김민석, 이종숙, 고찬양, 김순옥,
신찬호

1. 제안이유

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소관사무 및 지휘·감독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에서
조례에 위임한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4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

나. 입법예고: 2022. 8. 31. ~ 9. 5.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정·폐지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의 취합·분석 지원
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
6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관련된 자료 수집

· 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.

④ 정책지원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의원의 선거 및 정당활동 등 의원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사무국의 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(이하 “사무국”이라 한다)을 둔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사무국의 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2조제2항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법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</p> <p>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1. <u>의원의 조례 제정 · 개정 · 폐지, 예산 · 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· 조사 · 분석 지원</u></p> <p>2. <u>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· 분석 지원</u></p> <p>3. <u>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</u></p>

사 지원

4.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
관련 자료의 취합·분석 지원
등 지원
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
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
등 지원

6.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
조까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
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
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
적인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.

④ 정책지원관은 정치적 중립의
무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의원의
선거 및 정당활동 등 의원의 정
치적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지
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